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이승미 의원

나. 의안번호: 제2630호

다. 발의일자: 2021. 8. 11.

라. 회부일자: 2021. 8. 18.

2. 제 안 사 유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함.

3. 주 요 내 용

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조·수입사에 게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 토 의 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차량의 결함과 고장 등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 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 하고자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보급실적은 총 10,942대에 달하고 있음.

<서울시 연도별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구 분	합 계	'10~'18년	'19년	'20년	'21년
보급 대수	10,942	1,343	3,384	2,466	3,749

2021년 기준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작·수입사는 총 39개사로이 중 20개사는 서울시내에서 지정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거나 전문 수리업체에 위탁 또는 본사가 직접 수리하는 형태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있음.

반면, 나머지 19개사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본사 또는 공장에서 A/S를 제공함에 따라 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있고, 특히 2개사는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시민들이 A/S를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작 수입사 수리지점 운영 현황>

(단위: 개사)

합계	서비스센터 운영	전문수리 업체 위탁	본사 직접수리	수리지점 미운영
39	14	3	3	19

 안 제5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장이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제작·수입사의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와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전기이륜차의 안정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보험사의 보험증서(증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제사의 공제증권도 제출 서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이를 반영하여 인정 서류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23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 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2
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 체계 구비 여부	1. (개정안과 같음)
2.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u>사후관리</u> <u>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u> 제출 여부	2 <u>사후관리</u> <u>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u> <u>중 한 가지 이상</u>